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
직원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
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‘교육장 채용
권한 해제’ (안 제5조제36호)
- 나. 학교장 채용 권한 대상을 ‘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및
기간제근로자’ 로 명확화(안 제6조제18호)
- 다. 학교장 경징계(감봉·견책) 권한 대상을 ‘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
공무직원’ 으로 명확화(안 제6조제17호)
- 라. 학교장 중징계(정직·해고) 권한 대상을 ‘소속 학교 정원으로 관리
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’ 로 명확화(안 제6조제1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별첨 5
 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2)

다. 협의 :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

라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- 입법예고(2023. 7. 19. ~ 7. 29.) 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통보 확인서(별첨 3)
- 학생인권영향평가 : 검토 의견서(별첨 4)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6호 중 “채용, 정직, 해고, 전보”를 “정직, 해고, 전보”로 한다.
제6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, 복직, 승급, 복무, 평가, 감봉, 전책, 퇴직, 보수
18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
 - 가.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
 - 나. 기간제 근로자
19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, 해고
 - 가.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
 - 나. 기간제 근로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35. (생략)</p> <p>36.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<u>채용, 정직, 해고, 전보</u>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 ----- ---.</p> <p>1. ~ 35. (현행과 같음)</p> <p>36. ----- ----- ----- <u>정직, 해고, 전보</u></p>
<p>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<u>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, 휴직, 복직, 복무, 평가, 징계, 퇴직, 해고, 보수</u></p> <p>18. <u>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, 복직, 승급, 복무, 평가, 감봉, 견책, 퇴직, 보수</u></p>	<p>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<u>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, 복직, 승급, 복무, 평가, 감봉, 견책, 퇴직, 보수</u></p> <p>18.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</u> 가. <u>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</u> 나. <u>기간제 근로자</u></p>

<신 설>

19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
교육공무직원의 정직, 해고
가.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
나. 기간제 근로자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이번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,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행정권한 위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교육행정7급 윤지현 (02-2282-8645)

【별첨 3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관리번호	2023A서울교육016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행정관리담당관		
	담당자명	윤지현	전화번호	02-2282-8645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
	담당자명	홍정미	전화번호	02-399-9675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3년 07월 24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3년 07월 31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08월 01일</p>				

【별첨 4】

자치법규 · 단위사업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	
담당부서	행정관리담당관	담당자	직급	주무관	성명	윤지현 (02-2282-8645)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	위원장 마한얼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5조제36호 제6조 제17호부터 제19호	<p>-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'학교장 채용 권한 해제', 학교장 채용 권한 대상 '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및 기간제근로자'로 명확화, 학교장 경징계(감봉·견책) 권한 대상 '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'으로 명확화, 학교장 중징계(정직·해고) 권한 대상 '소속 학교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'로 명확화하도록 규정함.</p> <p>-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.</p>					원안동의

【별첨 5】

관계법규

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8841호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